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4월 30일 도시·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4년 4월 22일

나. 제 안 자: 이종숙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2024년 4월 24일

라. 상정일자: 제3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의결(2024.4.30.)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정재봉 의원)

□ 제안이유

○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자동차 표지를 발급 및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주차구역 이용 편의와 위반 차량 조치 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우선주차구역 이용 시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 부착 근거 미련(안 제7조)
- 나. 위반차량의 범위에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 미부착 차량 포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제6조제2항
-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6장[국가보훈부훈령 제14호]

나. 협조부서: 주차관리과

다. 입법예고(2024. 4. 23. ~ 4. 29.) 결과: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배금택)

가. 개정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자동차 표지1)를 발급 및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주차구역 이용 편의와 위반 차량 조치 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나. 주요 개정내용

- O 우선주차구역의 이용(안 제7조)
 -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이용 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자동차 표지 부착을 명시함.

- 상이자 단독명의로 된 비영업용 차량
- 상이자와 상이자 가족의 공동명의로 된 비영업용 차량
- 상이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상이자 가족의 단독명의로 된 비영업용 차량
- 상이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상이자 가족과, 세대를 함께하지 않는 상이자 가족의 공동명의로 된 비영업용 차량

^{1) &}quot;자동차표지"란 보철용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요금 감면 및 주차편의 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상이자 (국가유공자 등)가 사용하는 차량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발급하는 표지

[○] **보철용 차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 위반차량 조치(안 제8조)

- 위반 차량 범위에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 우선주차구역 위반차량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함.
 - ※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경우는 제외

다. 종합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이용 시 자동차 표지 부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 우선주차구역 이용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신분증서(또는 확인서)를 상시 소지하지 않아도 되는 편의성 증대와 함께
 - 자동차 표지를 통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 위반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됨.
- 이에, 국가유공자 등이 주차장 이용 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는 해당 사항을 적극 홍보해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붙임 관계 법령 등 각 1부.

붙임1 공영주차장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현황[2024.4.1. 기준]

연번	주차장명	총 주차면수	국가유공자 설치대상 면수	국가유공자 기 설치 면수	도색 예정일
1	등촌2-1	110	1		2024.4.19.
2	화 곡본 -1	97	1		2024.4.17.
3	화 곡본 -2	99	1		2024.4.17.
4	화 곡 1-1	99	1		2024.4.17.
5	화 곡 1-2	9			
6	화 곡 2-1	59	1		2024.4.20.
7	화 곡 3-1	97	1		2024.4.20.
8	화 곡 4-1	144	1		2024.4.19.
9	화 곡 5-1	26			
10	화 곡 5-2	27			
11	화 곡 5-3	13			
12	화 곡 6-1	293	3	3	2024.4.19.
13	화 곡 7-1	86	1		2024.4.18.
14	화 곡 8-1	58	1		2024.4.18.
15	화 곡 8-2	109	1		2024.4.18.
16	가로공원	499	5	5	2024.4.16.
17	곰달래문화 복지센터	248	2	2	2024.4.18.
18	볏골공원	219	2	2	2024.4.17.
19	서울식물원 (제2주차장)	202	1		2024.4.20.
20	등서초	32			
21	마곡7임시	400			
22	마곡8임시	200			
23	구암길	49			
24	꿈나무길	59	1		2024.4.16.
25	달구지길	29			
26	방죽길	49			
27	배다리동길	303	1	1	2024.4.16.
28	배다리서길	258	3	3	2024.4.16.
29	신학대길	40			
합 계		3,913	28	16	

[※] 공영주차장 총 주차면수: 3,913 / 국가유공자 총 설치면수(예정): 44

[※]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율 : 1.1%

붙임2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통계

(단위 : 명)

		(난위 : 명) 	
연번	소관지청 및 시군구	보훈대상자 인원	
1	서울지방보훈청 송피구	9,790	
2	서울지방보훈청 강서구	8,426	
3	서울북부보훈지청 노원구	8,300	
4	서울남부보훈지청 강남구	7,318	
5	서울지방보훈청 강동구	7,309	
6	서울지방보훈청 은평구	7,029	
7	서울남부보훈지청 관악구	6,986	
8	서울남부보훈지청 동작구	6,701	
9	서울남부보훈지청 서초구	6,311	
10	서울지방보훈청 영등포구	6,276	
11	서울북부보훈지청 성북구	6,021	
12	서울남부보훈지청 구로구	5,980	
13	서울지방보훈청 양천구	5,834	
14	서울북부보훈지청 도봉구	5,500	
15	서울북부보훈지청 중랑구	5,415	
16	서울북부보훈지청 동대문구	4,763	
17	서울북부보훈지청 강북구	4,629	
18	서울지방보훈청 마포구	4,625	
19	서울지방보훈청 서대문구	4,188	
20	서울지방보훈청 광진구	3,840	
21	서울지방보훈청 용산구	3,540	
22	서울지방보훈청 성동구	3,464	
23	서울남부보훈지청 금천구	3,215	
24	서울북부보훈지청 종로구	2,188	
25	서울지방보훈청 중구	1,855	
	합계	139,503	

(출처 : 서울특별시, 자료갱신일 : 2023.6.28.)

붙임3

관계 법령

□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 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 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로서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 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시간단위로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동 차(이하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라 한다)
-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u>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있다.</u>

□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국가보훈부훈령 제14호]

제6장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

제22조(발급대상) 보훈(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표지를 발급한다.

- 1. 보철용 차량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상이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차량. 다만, 마목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경우 그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으로 한다.
-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자로 구성된 단체
-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 라.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및 (사)6·18자유상이자회
-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자활용사촌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한 차량 중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의 회원 복지사업에 사용하 는 차량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여신전문 금융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대여를 받거나(이하 "시설대여"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

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로부터 임차하여(이하 "임차"라 한다.) 사용하는 차량 중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의 회원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차량

- 5. 상이자 본인이 사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1대
- 가. 상이자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
- 나.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의 수리 또는 정비 등의 이유로,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
- 다.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지역에 서,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
- 6.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 7. 상이자가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상이자 본인 명의의 차량

제24조(신청 및 접수) 보훈(지)청장은 상이자 또는 제22조제2호 각목의 단체 또는 법인 등이 자동차표지를 신규로 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동차표지 발급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상이자의 신분증 또는 단체나 법인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2. 별표3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진료분야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에 의해 현재 보행이 어려운 자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 3. 제22조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차량이 제

2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의 회원 복지사업에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가 발행한 서류 1부

4. 제2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별지 제6호서식]

자동차표지 구분



국가유공 상이자





5 · 18민주 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